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계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,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,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참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「계엄법」(법률 제20993호, 2025. 7. 22. 공포, 2025. 7. 2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계엄의 선포·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내용을 국회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, 참석 국무위원 등의 서명을 받고 복수 보관하도록 하여 적법한 계엄 선포 및 변경인지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,

나.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보고의무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에 명시된 대통령·국방부장관·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사항 및 특별조치 사항 외에도 계엄 선포·변경 및 해제의 사유, 판단 근거, 손실 발생 내역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

다.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참석 시 행정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운영의 절차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1. ~ 5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2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) ①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자의 수·성명 및 직책
3. 계엄 선포·변경의 사유 및 제출된 의안 내용
4. 출석 국무위원의 발언 내용(찬성 및 반대의견 명시)
5. 의결 방식 및 내용(재적, 찬성, 반대, 기권 인원수)

② 회의록에는 대통령·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 사실을 국무총리가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)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회 보고 시 법 제11조의3 각 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계엄 선포·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 사유 및 판단 근거
2. 법 제2조제5항,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선포·변경 및 해제가 국

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

3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 발생 내역

4. 계엄 관련 지출 예산 및 집행 내역

5. 그 밖에 계엄과 관련하여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을 요청한 사항

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 조치)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경우,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 사실, 장소 및 신병 상태의 확인
2. 국회까지의 신속하고 안전한 호송
3. 본회의장 도착 예정 시각, 호송 경로 및 호송 방법의 국회 통보
4. 호송 중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. 다만, 국회 경내에서의 호송 및 관리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킨 행정기관 등의 장은 조치의 내용, 시간, 호송 경로 및 방법을 기록하여야 하고,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(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) ①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.</u> <u>1. 회의 일시 및 장소</u> <u>2. 출석자의 수 · 성명 및 직책</u> <u>3. 계엄 선포 · 변경의 사유 및 제출된 의안 내용</u> <u>4. 출석 국무위원의 발언 내용 (찬성 및 반대의견 명시)</u> <u>5. 의결 방식 및 내용(재적, 찬성, 반대, 기권 인원수)</u> <u>② 회의록에는 대통령 ·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</u> <u>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 사실을 국무총리가 확인하여야 한다.</u>
<u>제2조 ~ 제15조 (생략)</u>	<u>제3조 ~ 제16조 (현행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제17조(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</u>

고)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회 보고 시 법 제11조의3 각 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계엄 선포·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 사유 및 판단 근거
2. 법 제2조제5항,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선포·변경 및 해제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
3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 발생 내역
4. 계엄 관련 지출 예산 및 집행 내역
5. 그 밖에 계엄과 관련하여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을 요청한 사항

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

회의 참석 조치)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경우,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 사실, 장소 및 신병 상태의 확인
2. 국회까지의 신속하고 안전한 호송
3. 본회의장 도착 예정 시각, 호송 경로 및 호송 방법의 국회통보
4. 호송 중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. 다만, 국회 경내에서의 호송 및 관리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킨 행정기관 등의 장은 조치의 내용, 시간, 호송 경로 및 방법을 기록하여야 하

	<u>고,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 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22